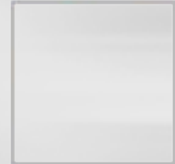


# 오픈소스 관련 법률적 위험요소 분석

The Best IP Firm in Korea  
Let Our Work Meet Your Opportunity  
Global IP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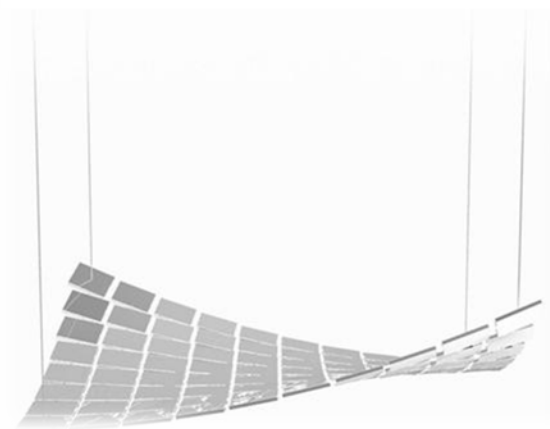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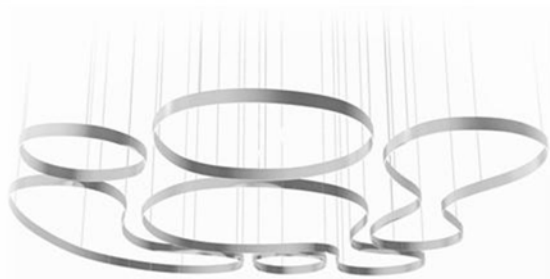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용준

[ejjeon@youme.com](mailto:ejjeon@youme.com)

# Contents



1

서 론

2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

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

4

기 타

## 서론 : 한국기업 입장에서 본 오픈소스 관련 법률적 리스크

### ● 국내법과 다른 외국법의 적용

- ❖ 분쟁의 준거법(applicable law)이 외국법(e.g.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되는 경우, 한국기업은 준거법이 되는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쉬움
- ❖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체도 영미법에 근거하고 있고 한국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e.g. derivative work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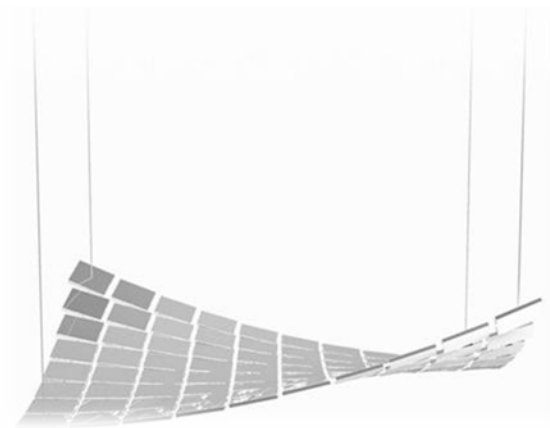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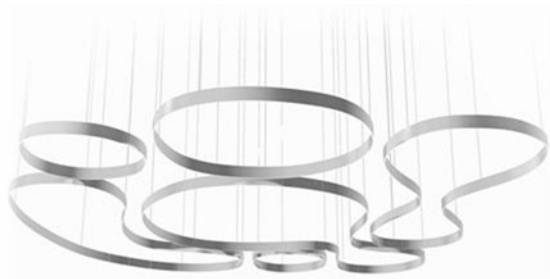
### ● 관할 법원

- ❖ 대체로 외국 법원에 제소됨
- ❖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됨

### ● 책임 발생시 국내 강제집행 가능성

- ❖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문제
- ❖ 우리 대법원 판결의 동향(후술함)

# Contents



1

서 설

2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

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

4

기 타

## Artifex v. Hancom 사례

- Artifex v. 한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2017. 4. 25. 결정 Case No.16-cv-06982-JSC)
- 사실관계
  - ❖ 원고 Artifex는 Ghostscript의 저작권자
  - ❖ dual license – 비상업용은 (A)GPL에 따라 배포. 상업용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제공의무 없음
  - ❖ 피고 한컴은 2008. 3. 부터 Ghostscript 8.6 버전 사용. 2011.4 ~ 2016. 8. 25.까지 Ghostscript 8.71 버전 사용(2017. 9.12.자 결정문)
  - ❖ 피고 한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Ghostscript를 GPL에 따라 사용한다고 표시(원고 주장). 그러나 GPL에 따라 SW를 배포하지는 아니함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인 2016. 8. 이후 Ghostscript 제거

## Artifex v. Hancorn 사례

- 원고의 주장

- ❖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 주장

==> Ghostscript 사용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 계약(GPL)에 기하여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명령)을 구함

- 피고의 주장

- ❖ FRCP 12(b)(6)에 따라 motion to dismiss 신청

- ❖ 원고는 계약침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실패

- ❖ 계약상의 청구는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배제

- ❖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실패

- ❖ 원고가 주장한 구제(손해배상청구) 조치의 일부는 이유 없음

## Artifex v. Hancorn 사례

- 법원의 판단 – 계약위반 부분
  - ❖ 원고가 계약위반 원인을 충분히 주장(plead)하고 있는지 여부
    - 계약위반 여부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판단
    - 계약위반의 인정 요건 - ① 계약의 존재 ②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 (performance) ③ 피고의 계약위반 ④ 원고의 손해발생(damage)
    - 피고는 GPL에 상호동의를 없으므로 계약이 부존재하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GPL이 아닌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없고, 원고는 피고가 Ghostscript를 GPL에 따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약위반 청구원인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음(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님).

## Artifex v. Hancorn 사례

- ❖ 계약위반 청구가 연방 저작권법에 배제(preempted)되는지 여부
  - 연방저작권법 제301조는 주법에 의한 동일한 청구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청구를 우선 적용함
  - GPL 라이선스에 기초한 이 사건 계약위반 주장은 저작권 침해와 비교할 때 파생저작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추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침해와 동일한 청구가 아님(저작권법은 금지청구만 인정)
  - 또한 이 사건은 국외적 침해에 기초한 것으로 연방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위반은 주장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저작권 침해 부분
  - ❖ 순수하게 국외적(미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Artifex v. Hancorn 사례

- 제9항소법원은 "순전히 국외적 행위로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한 청구는 저작권법에 지지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법원들의 태도는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모두 미국내에서 발생하여야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적어도 일부 침해 요소는 미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 법원의 판단 - 결론
  - 소송의 현 단계에서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summary judgement 신청
  - 2017. 9. 12. 법원은 피고의 summary judgement 신청을 기각함

## Artifex v. Hancorn 사례

- 관련 사례 : Jacobsen v. Katzer 535 F.3d 1737(2008)
  - ❖ 1심 판결
    - Artistic license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 계약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계약위반 이외에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나아가 계약위반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 2심(CAFC) 판단
    -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1심 판결 취소환송
    - 위 판결에 의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이 명확해 짐

## 종합적 평가

- 위 사건들의 의미
  - Jacobsen v. Katzer 항소심 판결은 미국 내 오픈소스 위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오픈소스 진영이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혜택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사안
  - Artifex v. 한컴 사건은 저작권자가 계약침해에 기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한컴의 미국 외 수익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법원은 방론으로 특정이행명령이 완벽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시를 하여 계약상의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
  - 듀얼 라이선스 구조를 채택하여 저작권자의 손해 인정이 직관적으로 가능하였던 사안임. 무상으로 배포되는 오픈소스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오픈소스 사용과 계약 성립

- 오픈소스 이용사실과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여부
  - ❖ 한국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락으로 이루어짐
    - 오픈소스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음
    - "오픈소스 이용사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식" 만으로 저작권자와 오픈소스 이용자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청약과 승락이 존재하는가)
    - 한국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내지 라이선스의 묵시적 승락
  -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전혀 준수할 의사없이 오픈소스를 무단이용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상용SW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해당 EULA에 따른 계약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계약책임

- 라이선스 계약 성립에 따른 법적 책임
  -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사로 오픈소스를 이용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예컨대 오픈소스와 결합된 모듈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 소스코드 공개, 배포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라마다 계약 성립, 책임요건이 상이함
    - 미국법상 계약위반청구는 주법 관할임.
    - OSSL 위반행위에 대한 계약위반책임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 외국판결의 승인, 국내 집행을 문제
  - ❖ 외국재판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함
  - ❖ 손해배상명령 등 금전판결에 대해서는 국내 승인, 집행은 상대적으로 용이함(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등의 이슈는 있음)
  - ❖ 저작권침해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hancor 사건에서 청구된 특정이행명령(specific performance)이 국내 승인,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됨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2.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3. 확정판결의 승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4. 승인요건의 상호보증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함

##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 대법원 2017. 5. 30. 2012다23832판결

미국법원은 손해배상(dama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무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 위 판결의 의의
  - ❖ 특정이행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라고 봄
  -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행한 특정이행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
  - ❖ 저작권 관련 미국 판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지명령,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 등) 등의 비금전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BusyBox 사례

- Erik Anderson & Rob Landley v. Monsoon Multimedia 등(한국업체 2곳 포함)
  - BusyBox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를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으로서 GPL 2.0을 따름
  - 저작권자들은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
  - 합의 내용 – 1)관련 제품에 GPL 원문 포함, 소스코드 제공 등의 GPL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제품 판매 재개 2) 기존 판매했던 고객들에게도 GPL 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고 소스코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 3) 기업 내에서 GPL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4) 상당한 금전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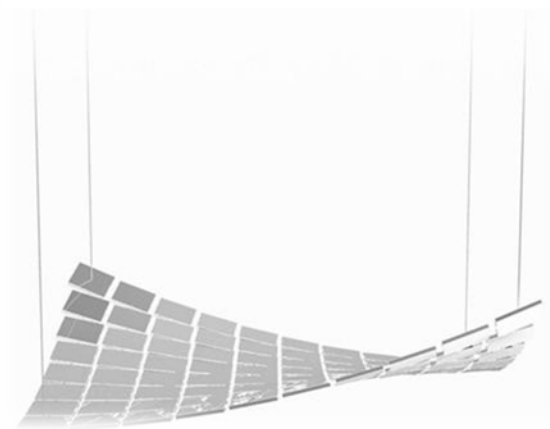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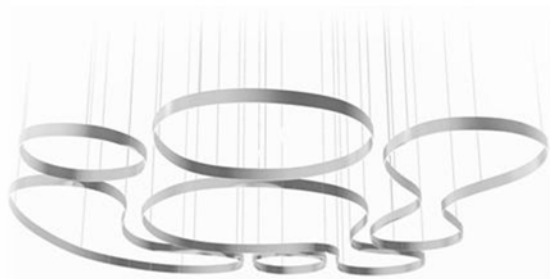
## Cisco – Linksys 사례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 Cisco를 상대로 GPL 2.0 및 LGPL 2.0 위반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2008)
  -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오픈소스 리스크 문제임
  - 문제 제품은 Broadcom이 Linksys에 제공한 것이며 Cisco가 Linksys를 인수했기 때문에 FSF는 Cisco에 대해 소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2009.5)
  - 합의내용 – Cisco는 Linksys 제품의 GPL 준수를 감독하는 compliance officer를 선임하고 FSF에게 비공개적 재정적 기여를 함

## GPL-Violations.org v. D-Link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판결(2006.6)
  - 독일법 하에서 GPL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
  - GPL를 따르는 mtd, initrd, msdosfs의 소프트웨어를 대만 D-Link의 독일 자회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펌웨어에 사용하고 GPL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임
  - 원고는 피고의 펌웨어의 조사하기 위하여 역분석을 시행하여 침해증거를 확보(디컴파일한 것은 아님). 피고는 독일법상 역분석이 금지되므로 불법증거라고 탄핵함

# Contents



1

서 설

2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

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

4

기 타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GPL 3.0, Apache 2.0, MPL 등은 기여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비독점적이고 무료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하여야 함
  -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락하려는 기업은 자사의 특허권 리스트를 확인하여 독점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라이선시가 OSS에 자사의 proprietary code를 결합시키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락된 특허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인
- 오픈소스 라이선시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GPL 3.0, Apache 2.0 MPL 등은 라이선시가 오픈소스 코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함. MPL은 그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도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 제3자가 오픈소스와 중복/저촉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대체로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보증을 부인하므로, 오픈소스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특허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오픈소스와 특허권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임
  - 과거 동영상 코덱 등의 영역에서 오픈소스와 충돌하는 특허권 목록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미래 IoT 관련하여서도 IoT 소프트웨어와 저촉되는 특허권 목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사건)

## IP innovation v. Red Hat & Novell

- IP innovation이 Linux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
  - 2007. 10. 9. 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IP innovation이 Red Hat과 Novell을 상대로 미국 E.D.Tex에 특허권침해금지의 소 제기
  -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1991년 등록된 미국 특허 5,072,412 "a User Interface with Multiple Workspaces for Sharing Display System Objects" 및 이와 관련된 2개 특허권
  - 침해대상제품은 Red Hat Linux, Novell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 & Server 제품임
  - 본 소송은 2010. 4. 30. 배심원 평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종결되었음 – 배심원은 특허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특허권들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Firestar v. Red Hat

- Firestar가 Red Hat의 JBoss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
  - 2006. 6. 28. 미국 E.D.Tex에 소 제기.
  - 원고 특허는 미국 특허 6,101, 502 "a method of interfacing an object oriented software application with a relational database"
  - 침해대상 기술은 JBoss Hibernate 3.0 기술
  - 2008. 6. 합의 ( + 비공개 금전지급)
  - 합의내용 1) 라이선서는 Red Hat에게 관련 특허에 대한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그에 따라 Red Hat은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 Firestar v. Red Hat

- 합의내용 2) 라이선서는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도 Red Hat Licensed Product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Community Member는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 오픈소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임
- 합의내용 3) 라이선서는 Red Hat 및 Red Hat Community Member들로 하여금 다른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 전세계적인 서브라이선스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오픈소스 취지에 부합
- 합의내용 4) 이와 같은 라이선스 허락은 Red Hat Product를 사용하지 않거나 참조하지 않는 Red Hat Combination Product 또는 Red Hat Derivative Product가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ed Hat Product와 관련없이 제3자의 제품만으로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지임

## 국내 사례 – X.264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4. 4.10.선고 2013나5383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 **작업 제어수단**;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 및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 국내 사례 – X.264 사건

### ● 사실관계

- 원고의 특허는 실시간/비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인코딩방법에 관한 것.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이용한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 **장치발명(청구항 8)과 대응되는 방법발명, 매체발명은 청구되지 않음.** 청구항1 발명은 1심 단계에서 무효로 된 상태였음

### ● 법원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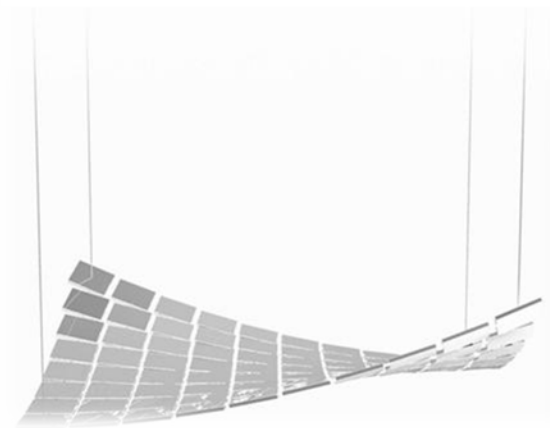
- 법원은 ① 원고의 특허발명은 **물건 발명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이 아니며,** ② 피고가 프로그램 자체인 **다음팟인코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간접침해의 성립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요건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음)

## 국내 사례 – X.264 사건

### ● 사건

- 청구항 8 장치발명에 대응하는 방법발명을 청구하였다면 **프로그램 실행행위**에 방법발명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록매체 청구항을 청구하였다면 **서버에 저장,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록매체의 생산,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Contents



1

서 설

2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

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

4

기 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사례

- 라이선스에서 특정 옵션 기능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하였으나 실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기능상 제약은 없어서 라이선시가 사용이 제한된 옵션을 사용한 경우
  - ORACLE 제품의 DB 파티셔닝 기능에서 문제된 바 있음
  -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불법을 유발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항변
- 라이선서가 라이선스의 유형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에 관한 라이선시의 이해도 부족하여 라이선시가 잘못된 유형의 라이선스를 택한 경우
  - 총판 등 다단계 구조에 기하여 라이선싱이 이루어진 경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라이선스 내용에 관한 이해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함
  - 라이선스 정책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사례

- ORACLE의 LMS, IBM의 SLR 등 소프트웨어 관리 내지 감사 정책에 근거하여 라이선시에게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실사를 강제하는 경우
  - 라이선스에 소프트웨어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라이선스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감사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많으므로 라이선스 조항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렌탈 라이선스의 문제
  - PC방 공방, 도서관,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피에 대한 라이선스(FPP) 외 별도로 렌탈 라이선스를 구입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사례

- 라이선시의 영업양도, 합병 시 라이선스의 이전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을 매매가 아닌 라이선스로 이해하기 때문에 라이선스에서 라이선스의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
  - 합병의 경우에는 라이선시의 권리의무를 모두 합병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라이선스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의 이용자수가 현저히 증가되는 때에는 라이선서가 이를 허용하기가 어려움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분쟁
  - 주로 GPL 계열에서 분쟁이 발생함



# Thank you !

변호사 전용준

ejjeon@youme.com

All rights Reserved 2005  
(c) Copyright YOU ME Patent & Law Firm

WWW.YOUME.COM

